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중 교정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등에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증원하며,

출입국·외국인관리 기관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 이체를 통해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과 인력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57”을 “761”로 하고, 일반직 계 “726”을 “73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16”을 “72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457”을 “22,598”로 하고, 일반직 계 “22,443”을 “22,58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238”을 “22,379”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	2명	2022년 9월 30일까지
3) 법무실 1개 정책관등	1명	2023년 3월 31일까지
4) 법무실 1개 과	3명	2023년 3월 31일까지

2. 법무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체류외국인 관리(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9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난민심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1)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5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2) 향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3)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4)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5)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16)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3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57</u>	• <u>761</u>	+4
일반직 계	• <u>726</u>	• <u>730</u>	+4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 <u>716</u>	• <u>720</u>	+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2,457</u>	• <u>22,598</u>	+141
일반직 계	• <u>22,443</u>	• <u>22,584</u>	+141
3급 또는 4급 이하	• <u>22,238</u>	• <u>22,379</u>	+14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